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23., 국무조정실)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업무 위탁기관에 민간기구(대한상의 등)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민간기구 추가
(안 제42조의7)

나. ICT 규제 샌드박스 접수업무 위탁기관에 민간기구 추가(안 제43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 1항,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7(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 3항,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업무의 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 융합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의7(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2조의7(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사무보조	1.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	3.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u>제43조(업무의 위탁)</u>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u>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 처리신청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요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u>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u> <u>제43조(업무의 위탁)</u>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 처리신청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요청
--	--

의 접수 및 연장신청의 접수 4.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 및 연장신청의 접수 5.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접수 <신 설>	의 접수 및 연장신청의 접수 4.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 및 연장신청의 접수 5.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접수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6142